



## 금 용 감 독 원

수신 (주)베스트코리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경유)

사본수신

제목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주)베스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

1. 귀사에 대하여 2020.12.17.~12.18. 기간 중 우리원이 실시한 서면검사 결과 귀사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조치예정내용을 2021.5.13. 사전통지하였으나 발송한 우편물이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 현재 귀사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동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3. 동 공시송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4. 조치대상자 중 위의 사전통지에 대해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불임 2 양식에 따라 2021.6.9.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주)베스트코리아인베스트먼트) 1부.

불임 2. 의견진술서(서식) 1부.

불임 3.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서식)1부.

불임 4.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권익보호 신청 안내 1부. 끝.

##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  
05/25  
검사역 안재훈 팀장(J) 05/25 박재영 국장 전결 05/25 김정태

합의자

일상감사

시행 ( 2021.05.25. ) 접수 (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632 팩스번호 02-3145-7649 / [jakeahn@fss.or.kr](mailto:jakeahn@fss.or.kr) / 비공개(5)